# <u>내국법인에 대한 세금 안내 (공개매수)</u> (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포함)

※본 내용은 KB금융지주의 주주님과는 무관하며 당사의 공개매수에 응하시는 KB캐피탈 주주에게만 해당됩니다.

# I.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

## 1.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

- (1) KB캐피탈 주주님 중 KB금융지주의 KB캐피탈 주식 공개매수에 응모하여 KB캐피탈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.
- (2)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. 양도가액은 주당 공개매수가격 27,500원에 공개매수 주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.
- (3)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11% ~ 24.2% (지방소득세 포함)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(4) 본건 KB캐피탈 주식의 공개매수대금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 시 본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.

### 2.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

- (1) KB금융지주의 KB캐피탈 주식 공개매수에는 양도가액의 0.5%의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. 양도가액은 주당 공개매수가격 27,500원에 공개매수 주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.
- (2) KB금융지주의 KB캐피탈 주식 공개매수는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인 KB증권을 통해서 이행되는 바,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인 KB증권이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(원천징수)하여 신고 납부할 예정입니다.

### II. 유의사항

- 1.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,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- 2. 본건 공개매수의 사무취급자로서 KB 증권이 KB 금융지주를 위하여 공개매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바, 본건 공개매수 관련 세무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1588-6611(KB 증권 고객센터)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.